

2020~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

1. 제안이유

우리구의 지역여건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본방향

- 대·내외 행정환경 변화 및 주민의 행정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 운용
- 지속적인 기능전환·쇠퇴부분 발굴·조정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인력운용의 건전성 제고
-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인력 운용
-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배치·운용

나. 주요내용

- 정원관리 직종·직급별 인력 배치계획

| 구 분 | 2018년 (12월말) | 2019년 | | 2020년 | | 2021년 | | 2022년 | | 2023년 | | 2024년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|
| | | 정원 | 증감 | |
| 계 | 1,134 | 1,140 | +6 | 1,145 | +5 | 1,146 | - | 1,146 | - | 1,146 | - | 1,146 | - | |
| 정 무 직 | 1 | 1 | - | 1 | - | 1 | - | 1 | - | 1 | - | 1 | - | |
| 일 반 직 | 소계 | 1,130 | 1,136 | +6 | 1,141 | - | 1,136 | - | 1,136 | - | 1,136 | - | 1,136 | - |
| | 5급이상 | 62 | 62 | - | 62 | - | 62 | - | 62 | - | 62 | - | 62 | - |
| | 6급이하 | 1,066 | 1,072 | +6 | 1,077 | +5 | 1,078 | - | 1,078 | - | 1,078 | - | 1,078 | - |
| | 전문경력관 | 2 | 2 | - | 2 | - | 2 | - | 2 | - | 2 | - | 2 | - |
| 별 정 직 | 3 | 3 | - | 3 | - | 3 | - | 3 | - | 3 | - | 3 | - | |

- 기능별 정원 증원 내역

| 구분 | 부서명 | 업무명 | 내용 | 인력 증원 | | | | | |
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| 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
| 계 | | | | 5 | 5 | - | - | - | - |
| 기획조정 | 기획예산과 | 주민참여예산 | 주민참여예산 전담인력 | 1 | 1 | - | - | - | - |
| 보건복지 | 교육지원과 | 초등돌봄 | 다함께 돌봄 인력 | 1 | 1 | - | - | - | - |
| | 아동청년과 | 아동학대 |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 | 2 | 2 | - | - | - | - |
| 환경관리 | 환경과 | 미세먼지 | 미세먼지 관련업무 전담인력 | 1 | 1 | - | - | - | - |

- 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

(단위:백만원)

| 구분 | 2018. 12.31 | 2019년 | | 2020년 | | 2021년 | | 2022년 | | 2023년 | | 2024년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| | 금액 | 증감 | 금액 | 증감 | 금액 | 증감 | 금액 | 증감 | 금액 | 증감 | 금액 | 증감 |
| 순계세입모 | 104,770 | 119,044 | +14,274 | 129,386 | +10,342 | 136,966 | +7,580 | 140,969 | +4,003 | 143,647 | +2,678 | 147,605 | +3,958 |
| 계 | 104,770 | 119,044 | +14,274 | 129,386 | +10,342 | 136,966 | +7,580 | 140,969 | +4,003 | 143,647 | +2,678 | 147,605 | +3,958 |
| 자치수입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지방세 | 71,172 | 78,581 | +7,409 | 89,761 | +11,180 | 96,936 | +7,175 | 100,384 | +3,448 | 102,416 | +2,032 | 105,710 | +3,294 |
| 세외수입 | 33,598 | 40,463 | +6,865 | 39,625 | △838 | 40,030 | +405 | 40,585 | +555 | 41,231 | +646 | 41,895 | +664 |
| 지방채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
| 기준인건비 편성액 | 95,793 | 102,994 | +7,201 | 106,816 | +3,822 | 111,167 | +4,351 | 115,695 | +4,528 | 120,408 | +4,713 | 125,313 | +4,905 |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나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관계법령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3조(인력운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이하 "기본인력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와 협의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6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④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,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2. 6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제3조(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·기능별 인력 배치계획
2.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
3.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
4.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(公社)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